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하도급정책 방향



이 동 규
공정위 독점정책과장

1. 중소기업 보호와 공정거래제도

중소기업이 우리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비중은 한마디로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98년말 현재 업체 수는 2,603천개로

99.2%, 종업원 수는 7,659천명으로 75.3%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21세기에는 지식기반경제의 도래, 소비자 중심의 시장구조로의 전환 등 환경변화에 따라 창의적이고 역동적인 중소기업에게는 유리한 기회가 부여되고 있으며, 중소기업의 건전한 성장은 경제민주화를 성숙시키고 산업의 신진대사를 촉진함은 물론 사회안전망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발전은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된 새 천년의 중요한 정책과제라 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이러한 중소기업 보호정책과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있다. 우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함)은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경제활동의 여건 조성을 통하여 중소기업이 자주적이고 창의적인 활동을 행하고 대기업과의 거래에서 거래상 약자의 위치에 있는 중소기업의 이익

이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의 하나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적으로 균형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도급거래에 관한 공정거래법의 특별법 내지 보완법으로서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함)을 지난 '85년 4월부터 제정하여 시행해 오고 있다.

중소기업 문제를 근원적으로 풀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관계를 수직적·종속적인 관계에서 협력적·동반자적 관계로 재정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현재 정부는 대기업의 핵심부문 설정과 중소기업과의 협력관계 강화를 기업구조조정의 기본원칙의 하나로 추진중에 있다. 즉 대기업은 핵심역량(Core Competence)으로 집중도록 하고 시너지 효과 및 효율성이 없는 부문은 과감하게 아웃소싱으로 전환토록 하는 한편,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수직적 거래관계에서 나타나는 불공정한 거래관행은 시장실패현상으로서 이를 치유해 나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제도의 운용을 통하여 중소기업 보호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책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전자상거래의 보급, 무한경쟁 속에서 지식과 정보가 부가가치 창출의 원동력이 되는 지식정보 혁명시대를 주도해 나가기 위해서는 자율과 창의가 최대한 발휘될 수 있는 시장경제를 확고히 정

금년에는 조사대상업체를 2만개 업체로 대폭 확대하여 5월부터 서면직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조사대상업체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인터넷 조사방식의 도입과 민간조사전문 기관에 대한 아웃소싱 등을 통해 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며, 매년 조사대상업체를 대폭 확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하도급거래감시전산망에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관리함으로써 원천적으로 불공정행위를 차단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착시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시장경제의 창달은 독과점화된 시장구조의 개선이나 대규모기업집단의 부당한 내부거래 등을 차단하는 노력과 함께 시장 내에서 행해지는 불공정거래행위를 근절시킴으로써 공정한 경쟁질서의 토대를 구축할 때 가능한 것이다. 특히 불공정 하도급거래관행의 개선은 대기업과 함께 우리 경제를 이끌어 갈 양대축으로서 중소·벤처기업의 건전한 발전과도 직결된다.

2.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동반자적 협력관계 강화를 위한 하도급정책 방향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하도급거래 중심으로 되어 있고 중소기업의 거래모기업에 대한 의존도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전체 중소기업 중 하도급거래에 종사하는 기업이 71%를 넘고

중소하도급업체의 거래모기업에 대한 매출액의존도가 83%에 달하는 상황에서 중소·벤처기업의 건전한 성장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정착에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건전한 하도급질서의 정착을 통해 경쟁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을 육성시키는 일은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사회의 버팀목을 만들어 나감으로써 '인간의 얼굴을 가진 시장경제'를 창달하는 첩경이 된다. 지난 4월 18일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보고시 대통령께서 건전한 하도급질서의 정착은 아주 중요한 국가의 기본정책이며 공정위가 특별히 노력할 것을 당부하신 것도 이러한 맥락이라 할 것이다.

(1) 서면실태조사를 통한 대규모 직권조사의 확대 실시

중소하도급업체들은 피해를 당하고도 거래중단, 보복 등을 우려하여 신고를 기피하고 있는 하도급거래의 속성을 감안할 때 신고사건처리 위주의 법운용으로는 하도급거래관행의 개선에 한계가 있다. 이에 따라 작년부터 처음으로 서면조사방식을 도입하여 대규모의 직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난해 원사업자 1,000개, 수급사업자 2,000개 업체를 대상으로 처음 실시한 대규모 직권조사는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총 635개 원사업자의 1,385건의 위반사실을 확인하여 시정 조치 함으로써 다양한 범위반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조사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원사업자 및 수급사업자가 다같이 하도급법 및 제도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게 됨으로써 법준수의식과 권리의식을 제고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특히 미지급한 어음할인료 등 522억원 상당의 하도급대금을 자진 지급하여 약 12천여개의 업체가 혜택을 보았으며, 직권조사의 확대 실시에 따라 처

음부터 현금지급조건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거나 하도급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겠다는 업체가 늘어나는 등 범위반의 사전예방효과도 컸다.

금년에는 조사대상업체를 2만개 업체로 대폭 확대하여 5월부터 서면직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또한 조사대상업체가 대폭 늘어남에 따라 인터넷 조사방식의 도입과 민간조사전문기관에 대한 아웃소싱 등을 통해 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그리고 매년 조사대상업체를 대폭 확대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하도급거래감시전산망에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관리함으로써 원천적으로 불공정행위를 차단해 나갈 계획으로 있다.

(2)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 제고

중소기업 보호 및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정착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가 중요한 관련임을 감안하여 하도급대금 지급시 어음결제 관행을 개선하여 현금결제비율을 제고하는데 하도급정책의 중점을 두고 있다.

기업간의 보편화된 결제수단인 어음관행은 많은 중소하도급업체가 겪고 있는 자금난과 경영여로의 중요한 원인이 되어 왔다. 어음은 기업간 신용수단으로서 기업의 유동성을 보완하면서 실물 거래를 촉진하는 순기능도 크지만, 결제기간을 장기화시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을 가중시키고 어음거래기업 중 한 업체의 부도 등이 연쇄적인 지급불능사태와 부도를 초래하는 부작용도 컸었다. 따라서 어음제도 개선은 중소하도급업체의 자금난 완화 및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전제이다.

이런 측면에서 지난 2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어음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한 것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매우 뜻 깊은 조치이다. 어음의 순기능을 고려하여 일거에

**지난 2월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어음제도
개선방안을 확정 한 것은 중소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매우 뜻깊은
조치이다. 어음의 순기능을 고려하여
일거에 어음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어음거래가 자연스럽게 축소될 수 있도록
구매자금융·기업구매카드 등 어음대체
결제수단의 활용을 촉진토록 하였고,
금융기관의 어음발행 정보관리를 강화하고
하도급거래관행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어음남발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어음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어음거래가 자연스럽게 축소될 수 있도록 구매자금융·기업구매카드 등 어음대체결제수단의 활용을 촉진토록 하였고, 금융기관의 어음발행 정보관리를 강화하고 하도급거래관행을 개선해 나감으로써 어음남발에 따른 부작용을 방지하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금년도 직권조사부터는 현금결제비율 유지, 어음만기일 제한 등 작년 4월 하도급법 개정으로 새로 도입한 하도급대금 결제방식의 조기정착을 위해 그 이행여부를 철저히 점검해 나갈 것이다. 또한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확정된 구매자금융·기업구매전용카드 등 어음대체결제수단의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세금감면·세무조사시 우대 등 인센티브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도 하도급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조치시 하도급대금의 현금결제비율이 높은 업체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제재조치를 완화하는 조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력이 취약한
중소하도급업체가 하도급계약
체결 과정에서 받게 되는 불이익과
분쟁발생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고 있고, 그 활용 확대를 위하여
하도급거래시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치를 취한 바 있다.

(3) 표준하도급계약서의 확대 보급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제력이 취약한 중소하도급업체가 하도급계약 체결과정에서 받게 되는 불이익과 분쟁발생요인을 사전에 제거하여 불공정하도급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의 작성 및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현재 건설, 건설자재, 전기공사, 자동차, 전자, 조선, 기계, 전기, 섬유, 소프트웨어개발, 엔지니어링활동, 건축설계 등 12개 업종의 표준계약서를 보급하고 있으며, 미보급된 업종에 대한 보급 확대를 위하여 관련 사업자단체와 협의를 진행중에 있다.

그리고 표준하도급계약서의 활용 확대를 위하여 하도급거래시 이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업체에 대한 인센티브제도를 도입·시행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 한국공

정거래협회, 생산성본부 등 관련 단체에 하도급법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고 교육·홍보활동을 강화함으로써 법위반의 사전예방에 주력하고 있다.

(4) 용역서비스위탁거래에 대한 하도급법 적용 확대방안 추진

현재 하도급법은 제조 및 건설분야에 대해서만 원칙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정보화시대의 도래, 경제의 소프트화 및 아웃소싱의 확대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용역서비스 분야에서의 위탁거래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방송프로그램 제작, 광고 제작, 화물자동차운송업 등 용역서비스 분야에서의 거래행태를 분석하고 이 분야에서의 불공정거래실태를 파악하여 하도급법 적용대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해 나갈 것이다. 다만 이 문제는 산업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큰 점을 감안하여 공청회 등을 통한 관련 업계 및 기관과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사전검토 과정을 거친 뒤 방침을 결정할 계획으로 있다.

3. 맺음말

그러나,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정착은 정부 당국의 노력만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제 원사업자들도 중소하도급업체를 공존공영을 위한 대등한 협력자로 인식하는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중소하도급업체의 성장과 발전 없이는 궁극적으로 원사업자 자신의 발전도 기대하기 어려운 만큼 협력적 대·중소기업 관계의 강화라고 하는 시대적 요청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중소하도급업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원사업자로부터 당한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적극 신고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우리경제가 “인간의 얼굴을 가진 시장경제”로 발전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의 서면직권실태조사에서는 중소하도급업체들의 보다 더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또한 세계화의 추세와 국제적인 기준은 무조건적인 중소기업 보호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 중소기업정책도 이제 선진국과 같이 경쟁정책적 차원에서 접근되어야 하고 바로 여기에 하도급정책의 의의가 있는 것이다. OECD의 경성카르텔 금지권고와 단체수의계약제도 등 중소기업 지원정책의 합리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할 것이다. 중소기업들도 보호의 객체로서가 아니라 경쟁의 주체로서 스스로 과감한 구조조정과 기술개발, 전문성 제고 등 체질 및 경쟁력 강화를 키워나가는 노력을 배가해야 할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창의력과 도전정신을 경쟁력의 원천으로 삼으면서 신선한 변화의 바람을 주도하고 있는 중소·벤처기업들의 성장은 매우 고무적

중소하도급업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원사업자로부터 당한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를 적극 신고하는 등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해 능동적으로 참여할 때 우리경제가 “인간의 얼굴을 가진 시장경제”로 발전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앞으로의 서면직권실태 조사에서는 중소하도급업체들의 보다 더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된다.

이고 희망적인 현상이라 하겠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들이 공정한 경쟁질서 속에서 건전하게 성장하여 국가경제 발전을 선도하는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시장에 대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갈 것이다. **공정**

용어들이

단체수의계약(團體隨意契約)

1966년부터 시행.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기업에 비해 자금력, 인적 자원, 시장 개척 및 관리능력 등 제반 경쟁여건이 불리한 중소기업제품의 판로확보를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물품을 구매할 때 해당 중소기업협동조합과 우선적으로 수의계약(隨意契約)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여 조합원들에게 물량을 배분토록 한 제도임. 공정거래법은 동 제도를 타법령에 의한 정당행위로서 법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이는 중소기업자간의 경쟁을 제한하는 대표적인 제도로써 정부는 경쟁제한적인 법령의 축소 또는 폐지 등 규제완화 차원에서 단체수의계약 대상품목을 점진적으로 축소하고 있음.